



특임교수 임용규정

제정일	2020. 1. 1.
개정일	2026. 6. 1.
개정차수	5차
담당부서	교무학사지원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특임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특임교수라 함은 국가·연구기관, 공공단체, 산업체,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뛰어난 자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, 연구, 산학협력활동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수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 (개정 2024. 9. 1.)
- 제 3조 (자격) 특임교수는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 단, 특수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4. 9. 1.)
1.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
 2.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
 3. 기타 본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(개정 2024. 9. 1.)
- 제 4조 (임용절차) ① 특임교수는 소속 학부(과)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1. 7. 1., 2024. 9. 1.)
- ② 특임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 9. 1.)
1. 특임교수 추천의견서 : 학부(과)장 또는 부서장 추천서(별지 1호 서식) (개정 2024. 9. 1.)
 2. 특임교수 임용지원서 : 본인 (별지 2호 서식)
 3. 학력증명서
 4. 재직(해당자에 한함)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 5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- 제 5조 (임용기간)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, 정년은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7조를 따른다. (개정 2024. 9. 1., 2026. 6. 1.)
- ② 특임교수의 신규임용 일자 는 매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며,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 (개정 2023. 5. 1., 2024. 9. 1., 2026. 6. 1.)
- ③ 특임교수의 재임용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제 6조 (복무) ① 특임교수는 본교 교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임교수의 임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② 특임교수는 본교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 중 하나의 임무만을 수행하며, 임무를 전환할 수 없다. (개정 2026. 6. 1.)
1. 강의전담자 : 강의를 전담하는 특임교수로서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.

2. 보직수행자 : 보직 임명에 따른 직책을 수행하는 특임교수로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.
 3. 특수임무 수행자 : 대학이 부여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임교수로서 강의는 주당 3시간을 원칙으로 최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. 단, 차년도 신설학과 임용자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(개정 2025. 5. 1.)
 4. 대학정책자문수행자 : 본교의 각 분야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자문을 수행하는 특임교수로서 보직 및 강의를 부여하지 않는다. (신설 2025. 5. 1.)
- ③ 특임교수의 소속은 학과(전공)를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④ 특임교수는 재직 중 발표논문이나 학술 및 대외활동 등에 있어서 “동서울대학교 특임교수” 임을 밝혀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4. 9. 1.]

- 제 7조 (보수) ① 특임교수의 보수는 임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계약한다.
- ② 특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강사료의 2배를 지급한다. 단, 특수임무 수행자는 주당 3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24. 9. 1.]

제 8조 (면직) 특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1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
2. 특임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제 9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(개정 2024. 9. 1., 2025. 5. 1.)

특임교수 추천 의견서

학부(과)명			
추천자 성명		생년월일	
현 근무처		직 위	
업무유형 (※ 해당 항목에 ✓표기)	강의전담자() 보직수행자() 특수임무수행자() 대학정책자문수행자()		
추천 사유			
※ [별첨] : 학(부)과 추천일 경우 회의록 첨부			
상기와 같은 사유로 특임교수를 추천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소속 학(부)과장 또는 부서장 : _____ (인)			
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			

【별지 제2호 서식】(개정 2024. 9. 1., 2025. 5. 1.)

특임교수 임용지원서

1. 인적사항

사 진	지원학과 (부서)		업무유형 (※ 해당 항목에 √표기)	강의전담자(), 보직수행자(), 특수임무수행자(), 대학정책자문수행자()	
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(우:)			
	이메일		병역	필, 미필, 면제	
	전화(주택)		핸드폰		
	현근무처		직위		

2. 학력사항

구분	기간	학교명	학과 및 전공	학위명	취득일
전문학사	. . ~ . .	○○대학			
학사	. . ~ . .	○○대학교			
석사	. . ~ . .	○○대학 ○○대학원			
박사	. . ~ . .	○○대학 ○○대학원			

3. 연구실적

발표구분	저자명(전원)	제목	제가지명	발행기관	발표년월일

4. 경력사항

기간	경력년수	근무기관명	직위	비고
. . ~ . .	년 개월			
. . ~ . .	년 개월			
. . ~ . .	년 개월			
. . ~ . .	년 개월			
. . ~ . .	년 개월			
총 경력 년수	년 개월			

5. 기타 참고사항

--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 : _____ (인)

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